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2월 6일, 이범연 의원 대표발의
- 회부일자 : 2018년 4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4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범연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 소재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은 직접적일 경우 원자력 방사능보다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석면(石綿)이 함유 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슬레이트지붕 해체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슬레이트지붕 해체 희망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및 지원대상과 지원제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7조)

-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지붕 해체에 따른 지원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붕개량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및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안 제7조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안 제8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규모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지붕개량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소재 건축물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의 석면(石綿)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
2. “지붕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철거하여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건축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材)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촌주택”이란 군 소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수요조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거주자와 그 인근 주민의 지속적·효율적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붕해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해체 건축물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주 건축물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3. 주거용 건축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철거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지붕해체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7조(우선지원) 군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지붕해체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붕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붕 설치 비용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철거 완료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	위 치		지 번	
	지역/지구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건축면적(m ²)		처리예상 폐기물면적(m ²)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슬레이트 철거 <input type="checkbox"/> 주택 철거			
전경사진				
읍·면장 확인 결과	- 제2조제2호(지붕개량 또는 철거) 해당여부 : 지붕개량 <input type="checkbox"/> 지붕철거 <input type="checkbox"/> - 제5조(정당한 소유권자) 해당여부 : 소유권 확보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 제6조(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 해당여부 : 적법 <input type="checkbox"/> 위법 <input type="checkbox"/> - 제7조(우선지원) 대상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p>「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평 창 군 수 귀 하</p>				
붙 임 서 류	토지사용 동의서(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한정) 1부			

